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59호

‘UV광조사로봇과 자동경화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한국라이텍개발(주) (황성도)		
	주 소	우 46700,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가길 53, 2층		
	전화번호	051-245-6868	팩스번호	051-245-6801
신청인	법인명(성명)	(주)블루큐어(김정민)		
	주 소	우 03736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68, 6층		
	전화번호	043-881-2030	팩스번호	043-881-2030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949호
- 명 칭 : UV광조사로봇과 자동경화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
- 기술분야 : 토목 > 상·하수도 >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
- 신기술의 내용

이 신기술은 유리섬유 튜브라이너를 UV광조사 로봇으로 신속경화를 구현하는 공법으로, 튜브라이너 내부 삽입이 용이한 로봇과 그 센서들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표 경화온도 범위에 도달하도록 이동속도 및 광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화시스템을 적용한 노후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 공법이다.

- 신기술의 범위

UV광조사로봇을 튜브라이너 내부에 삽입하고 로봇에 부착된 센서들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표 경화온도 범위에 도달하도록 로봇의 이동속도 및 광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경화시스템이 적용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 공법(관경 : D250 ~ 1,500 mm)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신기술품셈 : 해당 없음

5. 기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.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